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3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발 의 자 : 이훈기 · 박지원 · 김문수
박해철 · 채현일 · 허종식
박 정 · 박찬대 · 이주희
오세희 · 박수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및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024년에는 삭감되었다가 2025년에는 다시 증액되는 등 급격히 전환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대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하되 수립 주기는 5년으로 유지하여 장기적 방향성을 충분히 제시하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주기는 1년으로 단

축하여 변화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학기술기본계획”을 “10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5년”을 “매년 5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생략)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 ----- ----- ----- ----- -----10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 ----- ----- ----- -----.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① ----- ----- ----- ----- ----- -----매년 5년----- ----- ----- -----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